

# 학술지 연구윤리규칙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연구윤리규칙(이하 이 규칙)은 충남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「충남연구(이하 학술지)」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및 기타 관련 연구 결과물(이하 논문 등)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대상)** 이 규칙은 이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 등을 대상으로 하며,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, 심사위원 및 이 학술지에 논문 등을 기고하고자 하는 자(이하 저자) 등이다.

**제3조(윤리규칙 서약)** 논문심사자는 투고 논문 등에 대한 심사를 허락할 때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할 때에 이 규칙을 준수에 대한 서약을 한 것으로 본다.

**제4조(윤리규칙 준용)**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에서 제시하는 규칙을 따른다.

## 제2장 편집위원 윤리

**제5조(편집위원의 책임)**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 결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며,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논문 등 취급의 공정성)**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의 학술지 게재와 관련하여 저자의 성별, 나이, 소속기관, 선입견, 사적인 친분 등을 배제하고, 논문 등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논문 등 심사의뢰의 객관성)** 편집위원은 논문 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. 심사위원의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우호적, 적대적 인간관계 등을 배제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비밀유지)**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 및 저자에 대한 사항을

공개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

**제9조(논문 등 심사의 성실성 및 적절성)** 심사위원은 이 학술지의 공동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만약 본인이 논문 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동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논문 등 심사의 공정성)**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논문 등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문 등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, 학문적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논문 등 심사의 타당성)** 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심사위원은 평가의견서에 논문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여야 하며,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논문 등 심사의 비밀보장)**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 등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 논문 등의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등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도 안 된다. 또한 논문 등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등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4장 저자의 윤리

**제13조(저자의 의무)** 저자는 이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 등을 정직하고,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 또한 표절, 위조, 변조, 이중게재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.

**제14조(표절의 금지)**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 내지 주장인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된다.

② 비록 자신의 논문 등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해서도 안 된다. 또한 자신의 논문 등에 대한 출처를

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로 본다.

**제15조(이중게재의 금지)**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다른 학술지를 통해 출판된 자신의 논문 등(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등 포함)을 새로운 논문 등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.

② 이미 발표된 논문 등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전 논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,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 등이 이중 게재 내지 중복 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승낙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위조 및 변조의 금지)**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,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위조행위와 연구재료, 장비,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,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**제17조(인용 및 참고표시)** 공개된 논문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. 또한 논문 등 또는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.

**제18조(연구윤리서약)** 저자는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논문 등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 등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## 제5장 위반에 대한 제재

**제19조(연구윤리규칙 위반 보고)** ① 이 규칙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윤리규칙을 확인시킴으로써 문제를 정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만약 이 문제가 정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.

② 보고는 구두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능하며, 실명에 의한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윤리규칙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한 경우에는 익명의 보고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실명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윤리위원회의 구성)** ① 윤리위원회는 원내편집위원장과 원내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원내편집위원장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

된다.

②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재적 윤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체할 수 있다.

**제21조(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)** ① 윤리위원회는 이 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(제보자 및 상대방), 증인, 참고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한 후 이 규칙 위반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내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조사 관련자들은 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이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.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.

③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고, 원칙적으로 재적 윤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2조(피조사자의 보호)** ①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된 자(이하 피조사자)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윤리위원회는 이 규칙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때부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피조사자는 조사·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제재의 절차)** 이 규칙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제보자는 이 규칙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다.

2. 피조사자는 이에 대한 반박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.

3. 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, 원내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4조의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 이 경우 본 연구원 소속 직원이 제재 대상인 경우에는 제24조의 제재 이외에도 별도로 인사위원회에서 일반 징계를 행할 수 있다.

**제24조(제재의 내용)** ①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인에 대한 경고, 논문 등 게재의 취소 결정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.

② 이 규칙을 위반하여 투고한 논문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.

1. 논문 등이 학술지의 온·오프라인에 게재되기 전인 경우에는 “게재 불가” 판정

2. 논문 등이 학술지의 온·오프라인에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해당 논문 등의 “무효” 조치

3. 향후 5년간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“논문 등 게재 금지” 조치

4. 이미 지급한 “원고료의 환수” 조치

- ③ 편집위원장은 위의 제재 조치를 내릴 경우 그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으며,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